

“출판법을 보호육성법으로”

출판 관계법 공청회서 개선방향 논의

국회 문교공보위원회가 주최한 ‘인쇄매체 관계법 공청회’가 지난 9월7일 국회에서 열렸다. 문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7명과 학계, 언론계, 출판계, 인쇄계의 공술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관계법 및 지난해 10월 문공위에서 제안돼 11월 법사위에 계류됐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이하 ‘출판법’으로 약칭)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출판법의 경우, 「출판사와 인쇄소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절차법이면서도 사실상 규제법으로 기능하는 현행법을 최소한 보호육성법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술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등록이나 납본제도 등에 관해서는 공술인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다음에 이날 발표된 공술내용 중 출판법에 관련된 중요부분을 발췌, 요약해서 소개한다.

언론사의 겸영금지 등 보호육성책 필요

■許昌成(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현행 출판법은 ‘출판업을 보호함으로써 출판문화 향상발전을 도모’한다는 제1조 ‘목적’에 걸맞는 보호육성법으로 개정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업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다른 출판사와 인쇄소를 따로이 다른 법률제정이 전제가 돼야 하고, 주요간부직의 책임한계가 모호한 업계의 사정에 비추어 현행법 제3조 1항6호(주요간부의 직명 및 성명)를 삭제,

등록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출판질서의 확립과 혼란방지를 위해 동일·유사상호의 등록을 막는 규정이 신설돼야 하며,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납본의 경우는 납본필증의 즉시교부가 제도화돼야 하며,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 납본을 발행후로 변경하고, 문공부·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 3개처에 이르는 납본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큰 등록취소요건을 보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과 언론사의 출판겸업 금지의 명문화를 통해 적극적인 보호육성책이 강구돼야 하며, ‘도서소포제’등 통신판매 장려를 위한 우편요금의 인하제정조정이 절실하다.

단순한 절차법에 머물러야

■俞大琪(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출판자유실천위원장)＝현행 출판법은 위헌적 허가제와 검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어렵다면 등록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

등록청의 등록증 교부를 의무사항으로 강화, 신고제로 운영해야 하고, 따라서 등록취소조항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또한, 사전검열로 악용돼 수많은 금서를 만든 문공부 납본제도도 폐지돼야 하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 한해 출판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자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타 관계법률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많은 국가보안법, 외국간행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로막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이 폐지돼야 하고, 관계법은 문화적 표현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출판물의 서지사항 게재 의무화하도록

■全泳杓(신구전문대 인쇄과 교수)＝인쇄소 등록법을 따로 제정하고, 근본적으로는 출판·잡지·신문이 하나의 법에 수렴될 수 있는 가칭 ‘인쇄매체등록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현행법에서 개정돼야 할 것으로는 제3조의 등록사항 중 주요간부의 직명 및 성명이 삭제돼야 하고, 납본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납본필증을 수령증으로 대신하게 하고 납본출판물에 대한 보상도 청구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일정기간(3년~5년) 간행실적이 전혀 없는 출판사의 등록취소를 비롯해, 외국자본 유입금지, 모든 출판물의 서지사항 게재 의무화, 그리고 법인체 간행물은 등록없이 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신설돼야 한다고 본다.

납본은 보다 철저히 의무화돼야

■李重漢(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사 등록제는 등록 자체가 권리의 공식적 확인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등록법상의 여러 조건들이 단점과 폐해를 부각시킴으로써 신고제의 요구를 낳고 있다.

납본의무는 행정적 관리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창조물을 빠짐없이 보존한다는 문화적 과제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히 의무화돼야 한다. 현재 3곳에 이르는 납본처 중 어느 한곳에 철저히 의무를 부여해 그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보상은 즉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옳다. 차체에 영국의 엄격한 납본요구나 프랑스의 납본법에 준하는 별도의 납본법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등록요건에 있어서 개정안에 제시됐던 편집책임자 및 업무책임자의 명시는 한국의 출판현실에 비추어 무의미하며 불필요하다.

역시 개정안에 제시됐던 출판실적의 요구 및 그에 따른 등록취소조항은 출판의 존재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출판은 한 개인이 일생을 두고도 할 수 있으며, 10년에 1권을 내는 것도 우리 출판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취소는 등록자와 등록처 등 기초적 기재사항의 변동만을 기준으로 해서 불확실한 것을 기간을 정해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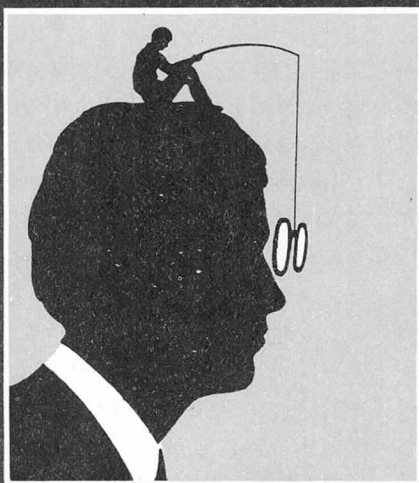
또, 등록취소 외에 법원의 명령으로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그 業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출판물의 배포 및 회수가 3개월 이상 걸리는 관행에 비추어 비실효적인 조항이다. —강철주 기자

게으른 사람을 위한 책
값 2,500원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 호
☎ 739-2520, 738-7709



게으르게 살아도 좋다!

『게으른 사람이 깨닫는 법』

타데우스 플라스/이상용 옮김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고행이나 엄격한 단식, 금연등의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



게·으·른·사·람·I